

첨부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부. 끝

도 로 국 장

(제3안)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1. 도로법 (법률제4545호, 93. 3. 10) 및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958호, 93. 8. 14)

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 개정예에 참고하고자 하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3. 9. 24 까지 건설행정과장 참조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 사항이 없으면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것임

가. 의견조회 사항 : 별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첨부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 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 기획담당관, 서관 (1-5), 서국 (1-14), 서본부 (1-4), 서구 (1-22, 건설관리과장)



심사(1993.9.6)제 204호	담당자	법제실4제국법부담(신)
오	하	중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3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도로법(법률 제4545호, 1993.3.10개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13958호, 1993.8.14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 (1)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적용
- (2)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 적용
- (3) 점용료 산정기준표 변경 — 별첨

나. 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 규정 신설(인상율을 최고 약 30% 이내로 조정)

원본대조필

다. 점용료등의 감면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전액 면제
- (2) 국민경제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 감면
-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

라. 도로점용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때 점용료 반환 규정 신설

마. 수수료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

바. 세입구분

- (1)시수입: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
- (2)구수입:폭 20m 미만 도로(폭 20m미만 도로중 시소유 제외)에서 징수한 수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9.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새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731-6371~3, 731-6771~3)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점용료산정기준표(제 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 전화·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전 주		1개	1년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2,000
	공 중 전 화				54,200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곱한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송유관·송 열관·전기 및 통신 시설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850
		직경 0.1m초과 0.2m이하			1,750
		직경 0.2m초과 0.4m이하			3,5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5,2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7,0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8,750
		직경 1m 초과			17,500
	기타의 관	직경 0.1m이하	길이 1m	1년	1,3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2,6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m 초과			26,200


원본대조필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시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300	
		기 타	표시면적 1㎡	1년	88,400	
	사 설 안 내 표 시		1개	1년	73,6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 타 의 용 도			3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	1년	176,800	
		기 타	1㎡		88,4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리소·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원본대조필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 수선대·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0.01을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1㎡		토지가격에0.05를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 판·대기소등의 공 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300
	기 타	1㎡	1년	토지가격에0.05를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2를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0.005를곱한금액
	기 타	1㎡		토지가격에0.05를곱한 금액




 원본대조필